

채권양도계약서(다함께성장론용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정서명	채권양도계약서(다함께성장론용) (구 외환은행)	채권양도계약서(다함께성장론용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외환은행) 명칭 삭제
세부 내용변경	<p>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</p> <p>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·사변·재해·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</p> <p>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 1 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</p>	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제한(공정위 및 금감원의 변경권고 반영)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